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11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박대출 · 김정재 · 김성원
이인선 · 김태호 · 김상훈
윤영석 · 서명옥 · 최은석
엄태영 · 추경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고, 기본공제율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의 경우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중소·벤처기업 등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연도별 투자 증가에 대한 세제 혜택의 부여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 2) (생략)

3) 2025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
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가) ~ 다) (생략)

나. (생략)

② ~ ⑤ (생략)

3. -----

가. -----

1) · 2) (현행과 같음)

3) 2025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

-----.

가) ~ 다)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